

소규모 집단의 불특정 일부가 명예훼손당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제소할 수 있어  
Patricia Butler v. Pulitzer Publishing Co. 6845.W.20473 (미주리주 동부지역 항소법원  
판결.1984.12.4)

## 사실개요

「미국비밀」이라는 책자에서 저자는 원고회사가 경영하는 백화점의 ① 모델들 중의 일부가 고급창녀이고, ② 여자판매원들도 그보다는 싼 창녀들이며, ③ 남자판매원들의 대부분은 동성연애자라고 썼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와 위 세 그룹의 종업원들, 즉 ① 출판 당시의 모델 전원 9명, ② 25명의 남자판매원들 중 15명, ③ 382명의 여자판매원들 중 30명이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문제의 출판내용에서 원고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여자판매원들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절하게 병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상을 각하하면서, 각각 개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 판결요지

1. 소규모의 집단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구성원 개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대규모의 집단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특정 원고가 명예를 훼손당한 장본인이라고 가리키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 누구도 청구원인이 없다.
3. 소규모의 집단의 구성원 일부가 명예를 훼손당하고, 그 일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 전원에 미치므로 구성원 개개인 누구든지 제소할 수 있다.

## 판결이유

어빙 R, 카우프만 판사의 견해

피고는 「미국비밀」 (U.S.A. Confidential)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의 저자들이다 원고들은 텍사스주 델라스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텍사스 법인인 네이만-마커스사와 세 그룹의 그 백화점 종업원들이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스탠리 마커스, 원고 네이만-마커스사의 사장)는 네이만 모델들 중의 일부가 장안 최고의 창녀들이라는 것을 모를지도 모른다. 그들 중 한명을 데리고 나가는 사람은 지그펠드의 천사를 데리고 나가는 플레이보이와 동열을 이루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가격, 한밤에 100 달러. 여자판매매들도 관참은 편이다. 예쁘고 대개는 훨씬 싸다. 평균 20 달러. 그들은 또한 모델들같이 잘난 체 하지는 않지만 더 재미있다. 우리는 델라스 늑대로부터 이 비밀을 얻었다. 네이만-마커스는 또한 유행전시회를 멋지게 장식하기 위하여 뉴욕 모델들을 수입함으로써 지역사람들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들 여자애들이야말로 그 종류의 진국이다. 석유재벌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1,000 달러짜리 지폐들을 이리저리 건넌다. 네이만은 원래 여자용품 전문점이었으나, 이를 운영하면 늙은 암퇘들이 그들의 남편들도 고급스러워져야 한다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네이만은 남자용품점으로 바뀌게 되었다. 글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잘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남자동성연애자들이 어떻게 거친 무법자들을 찾아갔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들 중 재주있는 자들은 결국 뉴욕이나 할리우드에 종착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워싱턴에서 지도부의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델라스 동성연애자 집단의 핵은 네이만의 남자용품점이 확장되었을 때 남자친구를 찾아서 뉴욕이나 파리 등지에서 온 많은 숫자의 네이만의 의상 및 모자 디자이너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는 판매간부의 대부분도 동성연애자들이다. 휴스톤은 심각한 동성연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휴스톤에는 네이만-마커스 가게에 있는 비싸고 수입된 동성연애자들이 없기 때문에 델라스에서와 같이 심각하지는 않다.」

개인원고들은 자신들은 문제의 명예훼손적 내용이 출판되었을 당시 네이만-마커스사의 종업원이었는데, 개입원고들의 세 그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1) 출판 당시 모델을 하고 있었던 전원인 9명.
- (2)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소한 총원 25명의 판매원들 중 15명.
- (3)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소한 총원 382명의 여자판매원들 중 30명.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의 첫부분은 문제된 내용이 남자판매원들과 여자판매원들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소상이 청구원인을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에 관한 관례법과 성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오히려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명예훼손 당한 집단이나 계층이 큰 경우에는 문제된 내용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제소할 수 없다.

(2) 명예훼손 당한 집단이나 계층이 작고, 집단이나 계층의 모든 구성원이 인용되었을 때에는, 누구나 제소할 수 있다.

복잡한 문제는 발표내용이 작은 규모의 특정 집단의 전원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경우에 발생한다. 어떤 법원은 그 집단의 어느 누구도 청구원인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 주의 법원들은 그러한 소송을 인정할 것 같기도 보인다.

이 지역의 연방항소법원은 불법행위에 관한 Restatement 를 「일반법」으로 인용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를 참조하면 제 564 조의 사례 2 중 주석(C)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이 B의 가족 중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고 보도했다. B의 가족 중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상황이 없는 경우에 그 신문은 B의 가족 전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관한 Restatement 는 명예훼손적 발표내용이 어느 작은 집단의 일부만을 가리 키고 있는 경우에 그 구성원의 어느 누구라도 제소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논리나 정의에 비추어 옳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의 관례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은 집단의 일부에 대한 심한 불도덕성의 전가는 무고한 사람을 제외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전원이 의심받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이 법원은 그들의 대부분이 동성연애자들이라고 언급되었던 남자판매원들은 뉴욕이나 기타 대다수의 주에서도 청구원권을 갖지만, 법원이 특히 반대로 판시하고 있는 주에서는 청구원인이 없다. 무슨 구제수단이 허용될 수 있는 청구원인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남자판매원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는 피고들의 각하신청을 기각한다.

여자판매원들인 원고들은 다른 범주에 속한다. 명예훼손이라 주장되는 피고의 책에서는 여자판매원들에 관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전원」이라든가 기타 비슷한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자판매원 집단은 출판 당시 382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큰 집단이다. 명예훼손적 내용에 특정인이 지칭되지도 않았다. 나는 그와 같이 큰 규모의 집단의 개인 구성원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판례를 한 건이라도 발견할 수 없다. 법원은 4 명의 검사관, 병원의 레지던트를 구성하고 있는 12 명의 의사, 경찰소대, 12 명의 라디오편집자들의 집단이나 기타 작은 그룹에 관한 유사사건에 있어서만 제소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명예를 훼손당한 집단이나 계층이 큰 경우에는 특정 원고를 명예훼손 당한 사람으로 지칭하는 상황이 없는 한 그 집단이나 계층의 개인 구성원 어느 누구도 청구원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에 걸쳐있는 노조의 모든 간부들, 워싱턴 D.C.의 모든 택시운전사들, 워싱턴 D.C. 내의 주차장 소유자들(10~12 명) 또는 어느 문종의 전패 등의 집단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의 소송은 실패하여 왔다.

여자판매원들인 원고들에게 아무리 유리하게 추론을 하더라도, 피고들의 명예훼손적 발표내용은 여자판매원들을 하나의 계층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정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전혀 없다. 또한 그 계층에 대한 명예훼손이 구성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계층이 작은 규모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저자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어 모든 여자판매원 개개인을 가리킨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에 위와 같이 판시한다.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 의하여 원고가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다면 청구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소상에서 주장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예외는 오직 원고가 배심원들로 하여금 그 말들이 특별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주장되는 명예훼손적 내용이 「자신들에 관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일반론적인 주장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여자판매원 개인들은 법률상 승소할 수 있는 청구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하신청을 받아들인다.

[이후의 판결이유 부분에서는 각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원고들의 각 소송들이 부적절하게 한 소송으로 병합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두 집단의 개인 원고들이 이 판결이유에 좇아 각각 별도로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소장을 각하한다.